

영등포구의회
제1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10. 2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民 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60호로 2016년 10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행정환경의 변화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7.1. 시행한 조직 개편 사항과 빚공해 업무,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등 증가하는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1,378명’을 ‘1,387명’으로 개정(증 9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51명’을 ‘1,360명’으로 개정(증 9명)

나.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별표 3)

- 총계 ‘1,378명’을 ‘1,387명’으로 개정(증 9명)
 - 일반직 총계 ‘1,373명’을 ‘1,382명’으로 개정(증 9명)
 - 일반직 6급 이하 ‘1,301명’을 ‘1,310명’으로 개정(증 9명)

다. 별정직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변경(별표 2)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변경 전	비율	0% 이내	30% 이내	55% 이내	15% 이상	
변경 후	비율	25% 이내	37.5% 이내	25% 이내	12.5% 이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1) 「지방자치법」 제112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6조

나. 예산조치

○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9급 3호봉 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금액	재원	비고
6급 이하 9명	320	구비 320	구비 100%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 영역의 확대와 행정 수요의 다변화에 발맞추어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9명 증원하여 정원 총수를 1,378명에서 1,387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인력이 필요한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2016.7.28. 시행되어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검사 또는 조사 등 시·도지사의 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되어, 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며,
-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C형 간염, 콜레라 등에 대한 보건소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 대응을 위하여 전담인력 확충을 하여야 하며,
- 2016.7.1. 조직개편에 따른 다문화지원과 신설 등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보이며,
- 현행 「기준인건비제」(2014.3.5.시행)는 정원 한도는 두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기준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행정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영등포구에 제시한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액은 총 1,167억 원이고, 영등포구 인건비 편성액은 총 1,078억 원(기준인건비의 92.4%수준)이며, 추가로 필요한 인건비 소요 예상액이 3억 2천만 원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 이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별다른 재정적인 문제없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그 밖에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비율(별표2)을 현행에 맞게 일반직과 복수로 책정된 정원도 포함하여 조정하였음.

(※ ‘2016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 현황’ 참조)

【 불 임 】

2016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 현황

□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 116,720,347천원

□ 영등포구 예산편성금액 : 107,858,972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총 계	107,858,972
101 인건비	87,348,672
101-01 보수	70,441,256
101-02 기타직보수	4,846,508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2,060,908
204 직무수행경비	2,383,614
204-02 직급보조비	2,383,614
303 포상금	4,200,276
303-02 성과상여금	4,200,276
304 연금부담금등	13,926,410
304-01 연금부담금	11,517,288
304-02 국민건강보험금	2,409,122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이하 "자율범위"라 한다)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범위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자치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